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7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차규근・김종민・신장식

김준형 · 김선민 · 황운하

박은정 · 정춘생 · 강경숙

이해민 · 김재원 · 백선희

서왕진 의원(13인)

제안이유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임.

그런데 정보기술 발달과 금융서비스 현대화 등으로 전통적인 지급수단 외에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은행권에서 전담하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

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1조제1항).
- 나.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 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지급결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 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법률 제 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에 관한사항

제81조제1항 중 "한국은행이"를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로, "사항"을 "사항(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통화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제88조를 준용한다.

제88조제1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를 "금융감독원에"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 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 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 시에 관한 사항 12. ~ 20. (생략) 12. ~ 20. (현행과 같음)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 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할 수 있다. ----사항(이하 이 조에 서 "운영기준"이라 한다)-----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 (이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 이라 한다)가 운영기준을 준수 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하거나 지급결제제도 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 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
용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통
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 지급결

 제제도 운영기관과 제1항에 따

 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

④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한다)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요구할수 있으며,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면조사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수 있

<신 설>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 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 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 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5)</u>	제	4항	에	π	른	Ę	구 급 명	-감-	독육	<u></u> 에
	<u>대</u> 형	한	검기	\ <u>}</u>	또:	느	공	동?	검사	-의	요
	<u>구</u>	빙	-법	ロ フ	Į	절:	차	=	제8	382	진를
	<u>군</u>	용 한	나다	•							
제	882	조(기	검ㅅ	}	및	공	동	검기	사의	3	1구
	등)	(1									
		<u>금</u>	융김	감돌	두원	에					
			•								

다.